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국가 순서별)

2020. 3. 19.(목), 18: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	가나	▶ 3.17. 13시(현지시간)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한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자국민 및 장기체류 허가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자가격리
2	가봉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3	가이아나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등(고위험국가 15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3.12.)
4	감비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3.17.)
5	과테말라	▶ 3.11.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조치(3.12.) ※ 상기 국가 외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입국 가능 ※ 자국민, 거주비자 소지자, 외교관은 입국가능하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지정병원에서 7일간 격리, △무증상의 경우 매일 집에서 검사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 7일간 자가격리 ※ 3.17.부터 미국 및 캐나다 국민 및 거주자, 미국캐나다발 입국자 대상 입국 금지
6	그레나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 3.18.부터 유럽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7	그리스	▶ 3.18 06:00-4.18. 06:00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8.) ※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각 국 주재 그리스 대사관의 예외입국 허가 필요 ※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 제외 이동 자제 /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기간(14일) 종료 전 출국 가능
8	기니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14일) -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 회수가능(3.16.)
9	기니비사우	▶ 3.18.부터 항공,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통한 입국금지(3.18.)
10	나미비아	▶ 한국, 중국, 이란, 영국, 미국, 일본 국민(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3.17.)
11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12	나이지리아	▶ 3.20.부터 4주간 코로나19 누적확진자 1,000명 이상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상기 국가 국민 대상 비자 발급 중단 및 조치 시행전 기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13	남수단	▶ 입국 전 코로나19 방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6.)
14	남아프리카공화국	▶ 3.18.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비자 취소 및 기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입국 전 20일내 상기 국가 방문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15	네팔	▶ 3.20. 24:00- 4.12. 24:00 한국, EU회원국,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16	노르웨이	▶ 3.16. 08:00(현지시간) 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 2.27-3.16. 입국자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발 제외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노르웨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17	뉴질랜드	▶ 3.19. 23:5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18	니우에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이란,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3.) ※ 니우에 정부가 발행한 서면 승인서가 있는 경우 입국 허용
19	니제르	▶ 3.19. 자정부터 2주간(연장 가능) 국경 봉쇄(공항, 모든 육상 국경)
20	대만	▶ 3.19 00:00 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대만 거주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21	덴마크	▶ 3.14. 12:00부터 4.13까지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덴마크 내 체류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재장례식재판 참석 등은 입국 가능
22	도미니카공화국	▶ 3.19. 06:00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3.17.)
23	독일	▶ 3.17.부터 향후 30일간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3.17.) ※ 독일 국민과 EU 회원국 국민이나 그 가족 구성원, 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국민 및 그 가족 구성원은 모국으로 복귀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독일 입국 허용 - EU 회원국 및 상기 언급된 국가(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내 영주권 및 장기거주비자를 보유한 비EU 국가 국민도 입국 허용 -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EU 국가 국민의 경우 긴급한 입국사유(장례식, 법원출두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입국 거부
24	동티모르	▶ 입국 전 4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경유 포함)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1.)
25	라오스	▶ 입국시 유증상자는 격리(지정병원) / △코로나19 확진자 백명 이상인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숙소에서 14일 자가격리(3.16.)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세안 회원국 대상 무사증 입국 중단(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 주한라오스대사관 또는 3국 주재 라오스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필요 / 기존 비자 소지자는 비감염 확인서 지참 및 여행력 신고
26	라이베리아	▶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3.16.)
27	라트비아	▶ 3.17-4.14.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
28	러시아	▶ 3.18. 00:00-5.1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송하는 자 의 경우 예외
29	레바논	▶ 3.15.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30	루마니아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입국수단 무관)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나, 동 격리기간 중 루마니아 출국 불가(3.9.) - (시설격리 대상) 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 (자가격리 대상) 한국(대구청도 외), 중국(후베이성 외), 이란, 독일(웨스트팔리아) ※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4,000 유로
31	르완다	▶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문진 및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시 추가 조사 및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 ▲양성 반응 시 확진자로 분류되어 치료센터로 즉시 이송, ▲음성 반응시 14일간 자가격리(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가족들과도 격리 생활) 및 보건당국 추적 조사, △무증상이라도 입국 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련 명부 등재 및 14일간 보건당국 일일 모니터링((3.8.)
32	리비아	▶ 3.16.부터 3주간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33	리투아니아	▶ 3.16. 00:00 - 3.30. 12:00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9 00:00까지 귀국행 항공편 환송 가능)(3.15.) ※ 외교관 및 내국인은 14일간 격리
34	마다가스카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35	마셜제도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36	마이크로네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37	마카오	▶ 3.18.(수) 00:00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중국(마카오 출입허가증 소지자), △홍콩(홍콩영주권 소지자), △대만(대만여권소지자) 거주자 및 출신 취업비자소지자 등 입국 허용 ※ 3.19.부터 그 외 국적 출신 취업비자소지자 등 입국 금지
38	말라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시 격리(지정시설),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당국관찰)
39	말레이시아	▶ 3.18.-3.31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나 건강검사 및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40	말리	▶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민 대상, △경증 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설 이송
41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42	모로코	▶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 (3일간 격리 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43	모리셔스	▶ 3.19. 10:00부터 15일간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3.16부터 레위니옹 발 모든 승객 및 3.18. 20:00부터 유럽, 영국, 스위스 발 모든 승객의 입국을 2주간 금지(3.16.)
44	모리타니아	▶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5.)
45	모잠비크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46	몬테네그로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47	몰도바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3.17.-4.1.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과 열차 운행 중지(3.16.) ※ 3.17. 00:00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3.16.)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거주권 소지 외국인,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무원 및 기사는 제외
48	몰디브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 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글라데시(3.9.), 스페인 전역 및 독일, 프랑스 특정 지역(3.15.), 말레이시아(3.17.), 영국(3.19.) 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금지
49	몰타	▶ 3.13.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3.13.) ※ 위반시 벌금 1,000유로
50	몽골	▶ 2.27.-3.28.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51	미국	▶ (괘) 3.19.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 후 괘에 입국하는 비 거주자 대상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WHO,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부합하는 건강확인서 미지참시 괘 보건부(DPHSS)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시설 적합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부적합 판정 시 지정시설 격리(3.18.)
52	미얀마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이외)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미얀마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3.15.) ▶ 입국 전 14일 이내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5.)
53	민주콩고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54	바누아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55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3.9.)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 의무 샘플검사 후 14일 동안 시설격리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 - e-visa 신청(www.evisa.gov.bh) 가능 ※ 상기 국가 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검사 실시 및 14일간 자가격리(3.16.)
56	바베이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57	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3.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58	방글라데시	▶한국, 중국, 이란 및 유럽(영국 제외)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외국인, 공항 인근 모스크로 이동 후 의무적 발열검사 실시(3.16.) -이상 징후 없을 시 14일간 자가 격리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59	베냉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3.17.) ※ 입국비자 발급 제한
60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61	베트남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3.18. 00:00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한국, 중국, 이란, 유럽 쉥겐 지역 16개국, 영국에서 출발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경유하는 모든 입국자 대상, 유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6.) / 상기 국가로부터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자는 ‘의료 검역 신고’ 의무 작성 - (의료검역 신고서) 인적사항, 최근 14일간 방문지역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http://suckhoetoandan.vn/khaiyte)으로도 신고 가능(3.7.) - 시설 격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택, 회사 및 체류지내 의료적 감시 및 단체 감시 실시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62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5)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63	벨리즈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이란, 일본,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6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2.) ※ 상기 지역 이외에도 입국시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금지 또는 14일간 자가격리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65	보츠와나	▶3.16.부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 18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18개국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중단, 기발된 비자 취소 및 발급 중단
66	볼리비아	▶3.20. 00:00 - 3.31. 국경 봉쇄 및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3.21 00:00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67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3.12.)
68	부르키나파소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69	부탄	▶3.6.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70	북마케도니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71	불가리아	▶3.18. 00:00(현지시간)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장기 체류자 및 그의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72	브라질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7일간 자가격리 권고(3.14.)
73	브루나이	▶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3.17.)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후베이성), 이란, 유럽(영국 포함)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74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75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를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입국 3일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서 제출 필요(3.6.)
76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항공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77	사이프러스	▶3.15. 01:00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사이프러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 전문직 종사자, △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3.16-3.30 사이프러스 공항(라르나카, 파포스)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미제출시 동일 항공편으로 귀국 조치)
78	상투메프린시페	▶ 31.9 08:00부터 15일간(향후 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79	세네갈	▶ 입국 전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공항 내 순례자 이용 시설에 격리(3.18.)
80	세르비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감염심화지역에서 방문한 경우 28일간 자가격리)
81	세이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3.18. 20:00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유럽국가(영국, 스위스, 프랑스령 마요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82	세인트루시아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83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84	세인트키츠네비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85	솔로몬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28개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86	수단	▶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87	수리남	▶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
88	스리랑카	▶ 3.1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 대상 2주간 입국 금지 및 기존 비자 효력 중단(3.15)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카타르,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국적자에 대해 2주간 비자 발급 중단
89	스웨덴	▶ 3.19.부터 30일간 유럽경제지역(EEA)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보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는 사람은 입국 가능
90	스페인	▶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6.) ※ 육로를 통한 이동은 스페인 국민 및 거주자만 출입 가능 ※ 항공과 해상을 통한 입출국은 가능
91	슬로바키아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등은 상기조치에서 제외되나 어떤 국가로부터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3.13. 07시부터 헝가리,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국경에서의 출입국심사 시행
92	시에라리온	▶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93	싱가포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란 방문 이력이 있는 단기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방문객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3.20(금) 23:59(현지 시간)부로 상기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외국인은 14일간 자택격리, 입국시 14일간 체류할 격리 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출국장 내 환승하는 형태의 경유는 가능)
94	아랍에미리트	▶ 3.19. 현지시간 00시부터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금지(3.18.) ※ 아부다비/두바이 환승객은 입국 가능 ※ 3.19 12:00부터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도 2주간 한시적 입국 금지(3.18.)
95	아르메니아	▶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격리
96	아르헨티나	▶ 3.16.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97	아이슬란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98	아이티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9.)
99	아제르바이잔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6.) ※ 3.13.부터 45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상기 국가에서 비자신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100	알바니아	▶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101	알제리	▶ 알제리 향발 모든 여객 항공 및 선박 중단(3.17.) ※ 접경국(모로코,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리비아, 튀니지) 육로국경 폐쇄
102	앙골라	▶ 3.20. 자정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3.20. 자정 이전 입국자 대상 보건부 지침에 따른 14일간 자가격리
103	앤티가바부다	▶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포함) 대상 입국금지(3.17.)
104	에리트리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11.)
105	에스토니아	▶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106	에콰도르	▶ 3.15. 23:59(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 23:59(현지시간)부터 입국 금지
107	에티오피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108	엘살바도르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30일간 지정시설 격리(3.17.)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09	영국	▶ 대구, 후베이성,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의무(3.13.) ※ 유증상자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999)으로 연락
110	오만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GCC 국민과 거주비자 소지자 제외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 중단(3.12) ※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육해공) 대상 14일간 격리 ※ 오만 관광부, 오만 내 여행객 대상 본국 귀국 권고(3.18.)
111	오스트리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란, 이탈리아(북부지역),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방문 후 입국(경유 포함)한 외국인(EU국적자 제외) 대상 입국전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오스트리아 보건 당국의 양식) 제시 절차 시행(3.9.) ※ 오스트리아-이탈리아간 기차편 모두 중단(3.13.)
112	온두라스	▶ 3.15. 23:59(현지시간)부터 7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 온두라스 거주자(내외국인) 출국 금지 ※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
113	요르단	▶ 3.17.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4) ※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
114	우간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산마리노, 벨기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115	우루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3.) ※ 3.17. 00:00부터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육해공) 전면 봉쇄 - 우루과이 국민 및 거주 자격 보유자의 입국만 허용
116	우즈베키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자국민 출국금지
117	우크라이나	▶ 3.15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3.13.) ※ 거주권자(영구임시)는 상기 조치에서 제외 ※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외교공관/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인 경우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사전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입국 가능
118	이라크	▶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0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119	이스라엘	▶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9.)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코로나19 저확산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이스라엘 내 안정적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120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비자 효력 중단) 3.13-4.15.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 관용, 유엔/국제기구, 승무원, 고용비자, 프로젝트 비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 격리 조치(3.13 인도시간 17:30(GMT 12:00)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 (뭄바이 입국)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A그룹)유증상자, 격리치료 시설로 이동, △(B그룹) 무증상자이나 60세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환자, 병원 또는 호텔 격리, △(C그룹)B그룹에 속하지 않은 무증상자 자가 격리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3.10부터 한국,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경우,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3.10)
121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 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 3.20. 00:00부터 한달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단기방문 무비자, 도착비자, 외교관/관용 무비자) 중단(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신청 시 건강확인서 제출 필요 - 입국 시 외국(한국 포함) 소재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발급한 비자 및 출국 전 7일 이내 발급한 건강확인서 반드시 소지
122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지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중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항공기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 지정 장소 대기 필요(3.10.)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123	자메이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되나 14일간 자가격리 ※ 상기 입국 금지 국가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124	잠비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최소 14일간 자가격리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3.15.)		
125	적도기니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26	조지아	▶ 3.18. 00:00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127	중국	1	간쑤성	▶ 간쑤성 진입시 ,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7)
		2	광둥성	▶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총 19개 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중 △유증상자는 병원 이동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기타 인원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거주지별 지정차량으로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광둥성 내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는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3.19)
		3	광시좡족 자치구	▶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4	구이저우성	▶ 구이저우성 진입시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9)
		5	네이멍구 자치구	▶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5)
		6	닝샤후이족 자치구	▶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6) ※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 지정시설 격리
		7	랴오닝성	▶ 다롄공항 , 국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비용 자부담) ▶ 선양시 진입시 , 3.19 0시부터 국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중 △무증상자는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유증상자는 병원 이송(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는 비용 자부담)(3.17) *검사 장소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되, 동 기간 숙식비용은 선양시정부 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도착 1시간 내 직장 혹은 지역 사회에 보고하고 동일하게 14일간 격리 ※ 여타 도시로 이동시 임시 투숙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일괄 지정호텔에 투숙(비용 자부담) ▶ 안산시 진입시 , 모든 역외 유입 인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3.16)
		8	베이징시	▶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0시부터) ※ 단,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사전 신청 가능(입국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정시설 격리) ※ 중국내 기타 공항만으로 입국 후 베이징 입경 인원은 사전에 거주단지에 베이징 복귀 일정과 관련 정보 통보 및 해외 입경자 관리조치 준수 ※ 중국민용항공국이 베이징 입국 예정 항공편을 텐진 등 주변 공항으로 착륙시켜 탑승객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무증상자는 베이징으로 이동, △유증상자는 현지 치료 조치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는 바, 현재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이와 관련 외교부·주중대사관 공지 및 항공사 최신 정보 등 수시 확인 요망
		9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3.6) ▶ 웨이하이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후반 7일은 자가격리 전환(호텔 잔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 유증상자 발생시 7일간 지정호텔 격리하며 핵산검사 실시하여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3.6.) ▶ 옌타이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시설로 이동하여 대기, △유증상자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자 발생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사 실시 후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3.1))</p> <p>▶ 지난시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최근 14일 내 외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난시 방문 2일 전까지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사전 신고, 미신고시 격리 및 진료비용 자부담)(3.16)</p> <p>※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에 입국하는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p> <p>※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p>
10	산시성 (陝西省)		<p>▶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p>
11	상하이시		<p>▶ 상하이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입경시 핵산 검사를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일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 자부담)(3.17)</p> <p>※ 같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한 집에 머무를 수 없으나, 함께 자가격리 건강관찰을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는 한 집에서 자가격리 가능</p> <p>※ △유증상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상하이 내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는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자가격리 중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시설 격리</p> <p>※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장쑤성, 저장성) 내 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침에 따라 격리 가능</p> <p>※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1주 이내) 출장자는 유효한 증명서(초청장 등)를 검역 당국에 제시하고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 △수시 건강 검측 △전용 차량 이용 △지정호텔 투숙 등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p>
12	쓰촨성		<p>▶ 청두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인원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의학관찰 실시,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3.18)</p> <p>※ 목적지가 쓰촨성 내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 인솔 하에 이동하여 해당 지역 격리방침 준수</p> <p>※ 숙박비, 의료비, 교통비 등 모든 비용 자부담</p>
13	윈난성		<p>▶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p>
14	장쑤성		<p>▶ 장쑤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 상이)(3.18)</p>
15	저장성		<p>▶ 원저우공항/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도시별 격리방침 상이),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비용 자부담)</p>
16	지린성		<p>▶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p> <p>▶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p>
17	충칭시		<p>▶ 충칭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입경시 핵산 검사를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3.17)</p>
18	텐진시		<p>▶ 텐진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3.18. 0시부터)</p> <p>※ 단, 특수한 상황(①, ②)의 경우,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신청 가능 (사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문 인력 검토 후 동의시 자가격리 실시)</p> <p>① 만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p> <p>② 단독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거주지 내 다른 동거인이 없을 경우</p> <p>※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출장자는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에 건강 검측 및 비즈니스 활동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p>
19	푸젠성		<p>▶ 푸젠성(샤먼시, 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만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가능
		20	하이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난성(하이커우, 썬야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주민위원회)에 신고 필요 ※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 적용
		21	허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3.5) ※ 해외에서 입국할 예정인 사람은 입국 2일전까지 거주지 관계기관(관리사무소 등)에 사전신고 및 정저우 도착 후 사후신고 필요(미신고시 비용 자부담)(3.17)
		22	허베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5)
		23	헤이룽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5)
		24	후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비용 자부담)(3.4)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25	후베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한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128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 	
129	짐바브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130	차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9부터 국제공항 봉쇄(육로는 이미 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민 입국금지 	
131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6. 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3.) ※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대상 출국 금지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 한국, 이란, 중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3.13.) ※ 위반시 최대 300만 코루나 벌금 부과 	
132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8.부터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대상 입국 금지(3.16.) 	
133	카메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8.부터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3.17.)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 	
134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6-4.15.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영주권 소지 외국인,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외교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관, 외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항공기, 선박, 열차 승무원, 물류 종사자, △외국 출입국 관계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 영주권자 및 카자흐 국적자의 가족인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3.17.) ※ 3.19.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출입 및 이동 제한
135	카타르	▶ 3.16. 저녁(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3.16.) ※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
136	캐나다	▶ 3.18. 12:00(EST)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환승객 제외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캐나다-미국 국경 잠정 폐쇄 결정(3.18.)
137	케냐	▶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3.15.)
138	코모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139	코스타리카	▶ 3.19. 00:00 - 4.12. 24:00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영주권 보유자, 외교관 등 외교공관 직원, 화물차 운전자, 주재국 경유자(입국장 밖 이동 불가) 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140	코트디부아르	▶ 3.16.부터 15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00명 이상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내국인, 영구거주권자는 입국시 14일간 시설 격리
141	콜롬비아	▶ 3.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3.17. 자정부부터 육상 및 해상 국경(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국경)을 봉쇄하여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과 출국 제한(3.16.) ※ 베네수엘라 국경은 3.14부터 봉쇄
142	콩고공화국	▶ 한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 격리, △보건의센터 모니터링 팀은 매 2차례 유선으로 건강상태 점검 및 자가 격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실시(3.9.) ※ 자가격리 사항 미 준수 시 시설격리 ※ 비자 신청 시 공인 기관에서 발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143	쿠웨이트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3.12.-3.26.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
144	쿡제도	▶ 3.16.-4.18.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145	크로아티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이탈리아, 독일, 이란,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말레이시아, 슬로베니아(벨라크라이나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3.13.) - (지정시설 격리) :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독일(하인스베르크), 이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 지정시설 격리자, 격리 비용 격리자 부담(약 500유로) - (의무적 자가격리) : 한국(대구청도 외), 중국(후베이성 외),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하인스베르크 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말레이시아, 호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체코,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아일랜드, 산마리노, 아이슬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바레인, 아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캐나다,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알제리, 카메룬, 페루, 에콰도르, 슬로베니아(벨라 크라이나, 돌렌스카)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자, 14일간 숙소 예약 증명 필요, 위반 시 벌금 약 1,070유로
146	키르기스스탄	▶ 3.17.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147	키리바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148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이란, 이탈리아발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출국 48시간 이내 발행), △건강확인서, △여행자보험(질병시 총 10만불 이상 보장 보험) 서류 제출 후 탑승권 발권 가능(3.10.) ※ 단순 인천 환승 승객 및 방콕 환승 승객의 경우(12시간 이내) 상기 조치 미 적용 - 입국 시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병원으로 이송, △무증상 시에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단, 타이항공은 항공사 정책상 한국발 비행기의 경우 환승 승객도 음성 확인서 및 건강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사 정책은 수시로 변동가능하니 반드시 항공사에 확인 필요 ※ 1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환승하여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49	태국	▶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UAE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7.) ※ 거주증(이카멧) 소지자의 경우에도 입국 금지 ※ 입국 전 14일 이내 상기 22개 국가를 여행한 제3국 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
150	터키	▶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UAE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7.) ※ 거주증(이카멧) 소지자의 경우에도 입국 금지 ※ 입국 전 14일 이내 상기 22개 국가를 여행한 제3국 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
151	토고	▶ 코로나19 고위험국에서 출발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3.16.)
152	통가	▶ 3.19. 01:00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8.) ※ 내국인,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153	투르크메니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 3.17.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수 제출
154	투발루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55	튀니지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포함) 금지(3.15.) ※ 상기 국가 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156	트리니다드토바고	▶ 3.17.부터 14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3.17. 지정부터 국경 봉쇄
157	파나마	▶ 3.16. 23:59(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158	파라과이	▶ 3.16.-3.30.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단, 항공편을 통한 입국은 3.18. 00:00부터 3.30까지 금지) ※ △내국인, △외국인 영주권자, △파라과이 정부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은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59	파키스탄	▶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3.17.) * 탑승 24시간 이내 RT-PCR 테스트 실시 - 음성 확인서에는 이름과 여권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원본을 파키스탄 도착 공항에 제출
160	파푸아뉴기니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161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62	페루	▶ 3.17. 00:00(현지시간) 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폐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 조치 시행 (3.16.)
163	폴란드	▶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유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164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165	프랑스	▶ 3.17. 12:00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는 예외)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원 등은 예외
166	피지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유 및 입국금지(3.6.) ※ 모든 쿠르즈선 입항 금지
167	핀란드	▶ 3.19 00:00-4.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외국인의 출국 및 자국 귀국을 위한 핀란드 경유는 가능
168	필리핀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대구·경북 출신 여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 출국 전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영문 번역본 필요 ▶ (Luzon 섬) 3.15.-4.14.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3.16.)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3.17. 00:00-3.19 24:00 72시간과 관계없이 출국 가능 - 외국인의 입국 역시 3.17. 00:00-3.19. 24:00 72시간과 관계없이 허용(기존 대구·경북 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 - Luzon섬 이외 국제공항 입국에는 영향 없음 ▶ (양헬레스시) 3.12. 00:00부터 한국(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경한 외국인 대상 1주일간 진입 제한, 체류기간 내 여권 및 영문주민등록 등본 소지 필요(3.10.) -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양헬레스시 입경한 외국인 대상 일시 진입 제한 ▶ (보홀주) 3.16. 00:01 - 3.20. 23:59 기간 중 모든 내외국인 대상 보홀주 방문 금지(보홀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 ▶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 3.17.부터 외국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격리 - △내국인, 세부주 거주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세부주 내 거주지 없는 외국인 14일간 호텔 격리(호텔 비용 자부담) ▶ (일로일로주) 4.14.까지 입경을 제한하며, 위반 시 14일간 격리(3.15.) - △3.17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 ▶ (제너럴 산토스시)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 이란·이탈리아발(환승 포함)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입국전 48시간 이내 발급) 지참시에만 입국 허용
169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헝가리 체류증 소지 외국인, 헝가리 국민의 부모 및 배우자인 경우 입국 가능
170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0. 21:00(호주 동부시간)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 제외
171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9.(목) 00:00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 ※ 홍콩거주자 자가격리, 홍콩비거주자 숙소(호텔 등)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전자 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 내외국인 정부 격리시설 강제격리 ※ 자가격리자는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 / 이동 및 출국 불가(격리조치 위반 시 법적 처벌)

/끝/